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자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1월 18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18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1. 17(월)	담당부서	자동차과
담당과장	정경록 과장(044-203-4320)	담 당 자	안재훈 사무관(044-203-4322)

전기차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
렌터카 등 대상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

- **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 강화 등 충전편의 개선**
- **렌터카, 대기업 등 민간차량수요자 대상 「친환경차 구매목표제」 시행**
- **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전환 등을 위해 친환경차 관련기업 지원 근거 마련**

- 「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1**월 18일(화) 국무회의를 통해 **"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**(약칭 : 친환경자동차법) **시행령 일부개정령안"을 의결**했다고 밝혔다.

* 친환경자동차 :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

○ **동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7월 공포된 "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"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,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.**

○ 동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**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,** ② **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,** ③ **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** 등이다.

【 친환경차법 및 시행령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】

1. 주거지 · 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△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를 강화하고, △ 국가 등 공공이 소유한 충전시설을 개방한다.

□ **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, 비율이 강화된다.**

○ **(대상)**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**이미 건축된 기축시설*까지 확대**한다.

* 법 시행일('22.1.28)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

- 의무대상기준도 **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확대**하고, **공중이용시설·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**으로 확대하였다.

- **재건축예정 시설**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**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**도 마련하였다.

○ **(비율)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%(현행 0.5%), 기축시설은 2%**(신설)로 강화하였으며, 관할 시·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- 아파트의 경우 **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**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**내연기관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**하였다.

○ **(기한)**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**의무이행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**할 예정이다.

- **충전시설 설치시한은** 국가·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·관리하는 시설은 **법 시행후 1년내**('23.1.27), **공중이용시설은 2년내**('24.1.27), **아파트는 3년내**('25.1.27)로 설정하였으며,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법 시행후 4년('26.1.27)까지 설치시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.

○ **(기타)** 산업부 고시 개정('22.1월중 공포 예정)*을 통해 **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등도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하여 의무이행 비용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.**

□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 **공공부문이 구축·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도록 하였다.**

○ 다세대·연립주택 거주자 등 주거지·직장에서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**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이용**할 수 있도록 **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가 위치, 개방시간,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**하도록 하였다.

2.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차 충전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△ 단속체계를 정비하고, △ 충전방해행위 기준도 보완한다.

□ **기초지자체로 단속주체를 변경하고, 단속대상을 확대한다.**

○ **(단속주체)**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**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하여 단속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.**

○ **(단속대상)**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**내연기관차 주차 단속이 가능**하였으나 의무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**모든 공용충전기로 단속대상을 확대**하였다.

□ **기존 법령은**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**충전개시후 일정시간*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충전없이 주차만 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주차에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으나, 충전없이 일정시간이상 주차할 경우에도 단속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.**

* 급속충전시설 1시간, 완속충전시설 14시간

○ 또한,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**충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충전방해 행위에 추가하였다.**

3.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이 촉진된다.

□ 렌터카, 대기업, 버스·택시·화물 등 **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**하도록 하는 **『친환경차 구매목표제』가 시행된다.**

○ **(대상) 국민생활환경, 의무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, 자동차대여사업자**(차량 3만대이상 보유)**,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사업자**(차량 200대이상 보유)**, 화물운송사업자**(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)**를 구매대상기업으로 설정하였다.**

○ **(비율) 전기·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등을 고려하여** 구매대상기업이 친환경차로 구매하여야 하는 비율인 **'구매목표'를 설정하였으며, '22년 구매목표 관련 고시를 금년 1월 중 확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.**

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제정(안) 】

구매대상	'22년 구매목표	
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	친환경차 22%	전기·수소차 13%
일반택시운송사업자	-	전기·수소택시 7%
시내버스운송사업자	-	전기·수소버스 6%
화물운송사업자	-	전기·수소화물차(1톤) 20%

□ 동 제도가 국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시스템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**구매대상기업과 지속 소통·협력해 나갈 예정**이다.

○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△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 소유·관리하지 않는 **지입차와** 차량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**리스차량은 구매목표에서 제외**하고, △ **일반택시사업자는**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비해 **구매목표를 50% 감면**하였다.

○ 또한, **법인·기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집행**하도록 하여 구매목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.

4.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 등을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촉진한다.

□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,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, 친환경차 재활용 기업 등을 친환경차 관련 기업으로 규정하고,

○ **친환경차 구매, 충전시설 구축, 친환경차 관련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**하기 위한 융자 또는 이차보전 근거 마련하였다.

□ 친환경차법 및 시행령 시행과 연계하여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 투자 등을 위해 **자금을 융자할 경우 이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이차보전예산***을 올해 신규 반영하였다.

* '22년 예산 24.9억원, 이자비용 지원규모(중소 2%, 중견 1.5%, 대기업 1%)

○ 구매대상기업의 친환경차 구매비용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등 **다양한 친환경차 기업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**해 나갈 예정이다.

5. 수소충전소 확산 촉진을 위해 수소충전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 등을 시행한다.

□ 국·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**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**(50% → 80%)하여 **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**하고, **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**(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이내)**에 수소충전소 1기이상을 구축**하도록 하였다.

○ 또한, **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** 개발제한구역내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**수소생산시설,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**하게 하였다.

【 향후 계획 】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**"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운영**해 나갈 것"이라고 하면서,

○ "이를 위해 **지자체·구매대상기업 등 제도이행의 주체와 지속적으로 소통·협의**해 나갈 예정 "이라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안재훈 사무관(☎ 044-203-43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